

증권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 증권번호 : 9000710230900622

■ 기본 사항

계약일자 (2023.09.08)

공제계약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연락처	T : 02-473-4664
	사업자번호 215-82-61148		F : 02-474-4665
	05514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풍납동)		
피공제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e-mail	
	사업자번호 215-82-61148		
공제기간	2023년 09월 28일 00:00 부터 2024년 09월 28일 00:00 까지		

■ 공제료 사항

총가입금액(KRW)	93,000,000	총공제료(KRW)	296,700
------------	------------	-----------	---------

※ 총가입금액은 대인보상한도액, 대물보상한도액, 특약 보상한도액의 합계입니다.

■ 소재지 사항

순번	소재지주소
1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풍납동)

■ 계약상세내용

- 후면참조

우리 협회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5차 1502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이선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발행일자 : 2023.09.08.18:04 www.khmagj.org



증권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 증권번호 : 9000710230900622

■ 소재지 사항

순번	소재지주소
1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풍납동)

■ 목적물사항

순번	승강기종류	승강기번호	운행구간	운행층수	최대정원(명)	적재하중(kg)
1	승객용	0065231	1-22	22	13	900
2	승객용	0065232	1-23	23	13	900
3	승객용	0065233	1-20	20	13	900
4	승객용	0065234	1-16	16	13	900
5	승객용	0065235	1-12	12	13	900
6	승객용	0065236	1-9	9	13	900
7	승객용	0065237	1-16	16	13	900
8	승객용	0065238	1-18	18	13	900
9	승객용	0065239	1-22	22	13	900
10	승객용	0065240	1-12	12	13	900
11	승객용	0065241	1-12	12	13	900
12	승객용	0065242	1-12	12	13	900
13	승객용	0065243	1-11	11	13	900
14	승객용	0065244	1-9	9	13	900
15	승객용	0065245	1-8	8	13	900
16	승객용	0065246	1-7	7	13	900

■ 담보사항

(단위: 원)

순번	담보사항	담보사항	가입금액(보상한도액)			공제료(원)
			1인당	1사고당	본인부담금	
1	승강기 승객용 배상	대인	80,000,000	무한	100,000	244,758
		대물	-	10,000,000		
2	승강기 구내치료비	대인	1,000,000	3,000,000	-	9,888
3	승강기 대위권포기	가입	-	-	-	24,485
4	승강기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	대인	보통약관 가입금액 한도			17,569
공제료 합계						296,700

■ 공제적용약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통약관	테러행위부보장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부보장추가약관	구내치료비특별약관
종업원(근로자)신체장해보장특별약관	대위권포기특별약관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발행일자 : 2023.09.08.18:04 www.khmagj.org



영수증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 증권번호 : 9000710230900622

■ 공제료 영수증

공제상품명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증권번호	9000710230900622
계약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사업자등록번호	215-82-61148
피공제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사업자등록번호	215-82-61148
공제기간	2023.09.28 ~ 2024.09.28	공제료(KRW)	₩296,700.-(일금이십구만육천칠백원정)
보상한도액	상세내용증권참조		

면세사업
사업자번호 107-82-09837

위 금액을 공제료로 정히 영수합니다.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5차 1502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이신미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발행일자 : 2023.09.08.18:04 www.khmagj.org



■ 승강기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요약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공제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공제자 :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공제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공제사업단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공제사업단이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대위권 : 공제사업단이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사업단이 지급할 이자는 사업단의 주거래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복리로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초일 00:00에 시작하여 말일 00:00에 종료합니다)
나. 영업일 : 공제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공제사업단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과 관련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공제사업단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사업단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사업단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공제자】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1항에 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자동보도 포함), 휠체어리프트)를 말합니다.

【승강기 이용자】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또는 시설물의 입주자 및 구내 상주자를 포함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사업단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사업단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공제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단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사업단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단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공제사업단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입금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제사업단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자가 직접 출력)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또는 변경청약서를 첨부 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사업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사업단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공제사업단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 또는 승낙 청약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공제사업단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공제사업단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공제사업단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29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공제사업단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사업단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사업단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사업단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취급자"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당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취급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당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사업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공제사업단은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공제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제사업단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9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공제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발행일자 : 2023.09.08.18:04 www.khmagi.org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사업단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로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사업단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로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요약

보상하는 손해

공제사업단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특별약관에서의 시설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승강기를 의미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치료비】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공제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제비를 말하며 국민건강공제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공제사업단은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험 또는 파괴시험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공제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공제자나 피공제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공제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험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공제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가.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요약

보상하는 손해

- ① 공제사업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단이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공제)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공제사업단은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공제계약자 및 소속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공고번호	제2023-46
------	----------

게시기간	2023. 08. 17부터
	2023. 08. 25.까지

제 목 : 8월 정기(14기-3차)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⑨항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43조 ②항,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43조 ②항에 의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회의일시 : 2023. 08. 16. 16:00 ~ □ 참석인원 : 5명 중 5명 참석
□ 의결내용 :

구분	회 의 안 건	심 의 / 의 결 사 항	결 과
심 의 안 건	2023년도 7월분 재무제표 및 관리비 부과 내역서 승인 건	2023년도 7월말 기준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7월분 관리비 97,309,716원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보고 및 재공고 시행 및 입찰 재공고문 승인 건	승강기전면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전에 대하여 전자입찰 개찰결과 3개 업체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효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재공고 전자입찰 시행 및 입찰 재공고문을 원안대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승강기 교체공사 송파구청 행위허가 신청 관련 입주자 등 투표 개표결과 보고 건	송파구청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 [입주자(소유자)+사용자(임차인)] 2/3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입주자 등 투표를 8.9(수)~8.11(금) 03일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그 개표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개표결과 : 442세대 중 319세대 동의(동의율 72.2%) □ 행위허가 조건인 입주자 등 2/3이상 동의율 확보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아파트 노후화된 시설물별 위치표지판 신설·제작 설치 승인 건	2014년 제작 설치된 아파트 구내 시설물별 위치 표지판이 너무 낡고 노후화되어,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파트 구내 시설물별 위치 표지판을 새로이 제작 설치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미화원, 경비원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검토 및 심의 건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미화원, 경비원을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관리동 1층 경로당 할머니 방을 송파구청에 사용가능 및 행위허가 여부 확인한 후, 노인회 와 협의를 거쳐 휴게실로 사용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승강기 24년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승인 건	2023년 9월 18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승강기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4,282,000원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 ☐ 회의일시 : 2023. 08. 16(수). 16:00 ~ ☐ 참석인원 : 5명 중 5명 참석
- ☐ 의결내용 :

구분	회 의 안 전	심 의 / 의 결 사 항	결 과
심 의 안 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제가입 승인 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계약기간이 2023. 09. 27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3항 의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 기존 계약업체인 DB손해보험 전적 보험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전적 공제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담보조건에서 전적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 수의계약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국토교통부 협조요청 안내문 보고 및 심의 건	TV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세부 시행 방침 부재로 입주민에 대한 안내가 지연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분리납부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약 3개월 소요 추정)되기 전, 한시적으로 운영될 TV수신료 납부 방법 및 지침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어, 붙임 안내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준비기간(약 3개월 소요 추정)동안 분리납부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접수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가 결 (찬성 5명 반대 0명)

2023. 08. 17.

풍납씨티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의안번호 제 6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제가입 승인 건	제안자 관리소장
--------------	---	-------------

1. 의결주문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제가입과 관련한 **수의계약 승인**에 의결하다.

2. 제안이유

- 우리 아파트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계약기간이 2023. 09. 27. 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 기존 계약업체인 DB손해보험(주) 전적 보험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전적 공제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담보조건에서 전적 공제료가 저렴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3. 주요내용

▣ 공제료 및 보험료 청약금액 비교(계약기간 : 2022. 9. 27 ~ 2023. 9. 27)

업 체 명	공제료 / 보험료 전적금액	비 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296,700원 /계약기간 1년	■ 담보 사항 동일함 ■ 계약 공통적용 약관은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 좋은 조건임
DB 손해보험 (기존계약 보험회사)	348,300원 /계약기간 1년	

붙임 : 공제료 및 보험료 청약서 각 1부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 청약번호 : 1000710230800247

■ 기본 사항

청약일자 (2023.08.04)

공제계약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연락처	T : 02-473-4664
	사업자번호 215-82-61148		F : 02-474-4665
	05514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풍납동)		
피공제자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e-mail	
	사업자번호 215-82-61148		
공제기간	2023년 09월 28일 00:00 부터 2024년 09월 28일 00:00 까지	전증권번호	

■ 공제로 사항

추가입금액(KRW)	93,000,000	총공제로(KRW)	296,700
------------	------------	-----------	---------

※ 추가입금액은 대인보상한도액, 대물보상한도액, 특약 보상한도액의 합계입니다.

■ 소재지 사항

순번	소재지주소
1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풍납동)

■ 청약상세내용

- 후면참조

■ 자필서명 및 확인사항

공제상품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청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건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오피스텔, 상가 등) 본계약은 무효이며 사고발생시 보상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공제계약자	인/서명	휴대폰번호/가상계좌발급 은행명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0번지 씨티극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010-2334-8758 기업은행

※ 공제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공제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가상계좌 안내

- 공제기간 시작 일자 전에 반드시 입금하셔야만 공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됩니다.
- 가상 계좌번호는 임시발급된 계좌이므로 중금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가상 계좌는 발급일로부터 공제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유효합니다. (발급일로부터 최대 30일 유효)

청약서만으로는 공제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공제로 납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 받으셔야 하고 전산발행된
공제가입증권(공제 증권)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본회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담당자 : 이민영 연락처 : 1599-5113 / FAX 1599-1107



청약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함께, 약속

청약서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하고 전산발행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뒷면의 꼭 아셔야 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번호	44389531Q380001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증권번호		보험기간	2023년 09월 27일 24:00부터 2024년 09월 27일 24:00까지

기본사항

계약자	풍납시티극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인/사업자번호	215-82-61148
주 소	(05514) 서울 송파구 풍납1동 509 씨티극동아파트	전화번호	02-473-4664
피보험자	풍납시티극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휴대폰번호	
		주인/사업자번호	215-82-61148

계약사항

갱신유무	신규	구간/기간	기간보험	정산유무	정산계약	심사결과
구증권번호		요율구분	통계요율	납입방법	일시납	
상품유형	기업성	공동인수	당사단독	소비자유형	전문금융소비자	

보험료사항

총보험료	WON	348,300	환 율	1	원화환산보험료	348,300
보험료입금계좌		은 행			계 좌 번 호	

소재지 사항

소재지 번호	소재지 정보
1	05514 서울 송파구 풍납1동 509 씨티극동아파트

목적물 사항

소재지번호	목적물번호	목적물명	목적물정보 구분	목적물정보 값
1	1	승강기	승강기종류(고유번호: 승강기명세참조)	승객용 엘리베이터(20명 미만)(5층 초과 25층 이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예) 국가,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단체보험, 기업성보험 가입자 등
-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사고후 보험가입 등)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가입제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①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②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③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④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해당 권리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 예

- 본인은 야간(오후9시~다음날 오전8시) 방문, 전화권유 판매를 요청하였습니다. (야간 방문판매인 경우만 답변) ☐ 예

-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과 청약서를 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계약자 (약관수령필)

(서명)

이 계약의 인수를 담당한 본인은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하였고, 상기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자에게 분명히 안내,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취급자 확인:

(서명)



담당자

광화문사업단 광화문원원지점 지에이스타금융_하이보험마켓 심승보 (고유번호: 20220420001357 연락처: 010-8941-1803)

불완전판매율 : 0.0% / 업계평균 : 0.03%

홈페이지

www.idbins.com